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8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한지아·서범수·이인선

진종오 • 장동혁 • 박정하

조은희 · 김형동 · 김승수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한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 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 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때 피해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3.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

고 충분히 설명할 것

-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 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 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제2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한다.
- 1. 조사 과정이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다는 사실
- 2.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 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촬영된 진술 및 영상물 촬영이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 나. 외국 거주
-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7조제2항 중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 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 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 ② (생 략) 배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개 정 안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 1.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할 것

3.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 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

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

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

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 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 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 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 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 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 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 으로 본다.

① (현행과 같음)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를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 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 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1. 조사 과정이 영상물 녹화장 치로 촬영된다는 사실
- 2.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이 증거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삭 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⑦ (생략)

<신 설>

<u><신</u> 설>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6조의2(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수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 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

<u>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u> <u>정한다.</u>

2.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 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촬영된 진술 및 영상물 촬영이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u>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u> 애

라. 소재불명

<u>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u> 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상태,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생 략)

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 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 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 다.